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3. 17. 오세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 3.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세희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인력·판매·수출 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

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조직·예산 등의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장철민의원·오세희의원·김동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